

의안번호	2219483
의 퇴 인	김종민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7.
추계번호	26A3086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○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－ 2. “벤처투자”란 창업기업, 중소기업, <u>벤처기업, 소셜벤처기업</u> 또는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함 － 6의2. “소셜벤처기업”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(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)	○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 － 6. <u>소셜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</u> － 7. <u>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방안 마련</u> － 8. <u>소셜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확산방안 마련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 안 제5조제7호 신설(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)	·미대상 － 개정안은 벤처투자의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,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－ 또한, 중소기업부는 개정안의 내용 중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방안 마련의 경우 현행 인력 및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
2	안 제5조제6호 및 제8호 신설(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소셜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확산방안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 - 개정안에 따른 “소셜벤처기업”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0항¹⁾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함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셜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소셜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확산방안 마련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소셜벤처기업 투자 촉진과 관련한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소셜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향후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전제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가정할 수 있어야 하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 - 참고로, 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※ [참고자료] 임팩트펀드 투자대상 및 연도별 임팩트펀드 조성현황

1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⑩ “소셜벤처기업”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.

제16조의10(소셜벤처기업)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,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11조의7(소셜벤처기업의 요건)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“사회성,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1.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
2.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
3.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

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표 1] 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 (회계, 코드)	내용	2026년 제1회추경예산
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, 5264-301)	벤처투자모태조합이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 - (임팩트펀드)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 구하면서 혁신성·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기업에 투자	10,000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임팩트펀드 투자대상 및 연도별 임팩트펀드 조성현황

(자료: 중소벤처기업부)

- **(투자대상)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·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기업에 투자**

* 운용사가 소셜벤처기업 정의를 다음에 따라 제안:

- ① UN 지속가능개발(SDGs) 17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
- ② 사회통합, 사회문제, 공동체, 환경/생태 분야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순수 비영리 조직

구분	사회통합	사회문제(필요)	공동체(공공)	환경/생태
사업 분야	① 취약계층 포용 ② 불평등 축소 ③ 저개발국가 원조, 협력 등	① 교육/저출산 ② 건강과 웰빙 ③ 고용/일자리 ④ 주택/주거 ⑤ 문화 ⑥ 사회적 책임 이행기업(CSR 등) ⑦ 장애인기업	① 공공장소 활용 ② 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 교통/수도/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 ④ 로컬크리에이터	① 수질과 위생 ② 공해와 오염 개선 ③ 기후변화 ④ 청정에너지 등

- **(현황) 그간('21~'25) 중기부 모태펀드가 400억원 출자, 732억원 규모 임팩트 펀드 조성 → 378억원 투자**

[표 2] 연도별 임팩트펀드 조성현황

(단위: 억원)

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	계
임팩트펀드 (중기부 출자)	100	100	-	200	-	200	600
펀드 조성 (민간)	167	200	-	365	-	결성 중	732
투자 금액	118	94	-	166	-	결성 후 투자예정	378

주: 임팩트펀드 출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과 회수재원으로 구성되며, 회수재원 출자규모는 매년 기획예산처 협의 후 결정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